

## 토론 요약문

#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2012년 10월 5일 서울, 대한민국

### 개회식

이삼열 사무총장은 여러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국제회의의 발표와 토론을 맡은 쉐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계속해서 이 사무총장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140개국 이상이 협약에 가입하고 260여 개 종목이 지정 등재되었으며, 여전히 더 많은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이들이 무형유산의 개념을 생소하게 여기는데다 무형유산의 범위나 종류, 등재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실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또한 그 동안 여러 활동을 해온 과정에서, 아직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미흡하며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휘준 이사장은 지난 7월에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소개하고 모든 귀빈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안 이사장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이행된 이래로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무형유산 보호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역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무형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회의를 개최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 세션 1. 2003 무형유산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좌장을 맡은 이근관 교수가 회의 조직위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표자에게 발언권을 주기에 앞서 이 교수는 '2003 무형유산협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션 1의 제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03년 협약이 갖는 의의로 이것이 각종 문제를 개념화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국제사회에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 협약이 유럽 중심의 문화 개념에서 서구권 및 유럽 외 지역의 문화적 관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협약이 원주민 공동체와 같이 하위 국가나 비국가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2003년 협약이 관련 문제의 국경을 초월한 공통된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자넷 블레이크 박사는 발표문에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기를 집중 조명했으며, 문화와 발전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담론에서 2003년 협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2003년 협약이 탄생하는 토대가 된 국제환경과 관련해 발표자인 블레이크 박사가 주목하는 바는 '문화가

1992년 리오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2003년 협약이 기념물 중심의 서구적 관점을 토대로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탈피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발표자의 지적도 역시 타당하며, 2003년 협약이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토착공동체를 고려 요인으로 수용하는 등 진일보한 형태라는 지적도 마찬가지이다.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의 맥락에서도 유산의 결합적 가치(associative value)와 관련해 '공동체의 역할은 점차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 운용지침에 포함된 등재 기준이(그 후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결합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등재기준 VI: 유산의 무형적 문화 측면에서 설명).

블레이크 박사는 2003년 협약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실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 실연양상은 지역에 따라 각각각색이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유산 보호방안이 요구된다. 블레이크 박사는 무형문화유산(또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과 국가 간의 국경이 상응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블레이크 박사는 2003년 협약에 기반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영역에서 이민자 공동체에 상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는 일이 적합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블레이크 박사는 말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의 확대가 반드시 상호 간의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들 간에 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이들 국가가 문화적 헤게모니와 역사적 기원,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이미 관찰된 바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이 관여하게 되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예: 매사냥)는 상이한 유형의 문제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즉 문화유산의 범위나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유산들이 형태만 동일하면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라는 목적 하에 하나의 문화유산종목에 분류하게 되면 문화유산의 탈맥락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무형문화유산의 '기원'이 중요한가? 만약 그러하다면, 특히 인근 국가 간에 복잡한 (때로는 정치적 성향을 띤) 역사적 문제가 제기되어, 등재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무형문화유산의 분포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제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발표 전반에 걸쳐 블레이크 박사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의 중요성과 더불어 2003년 협약을 실행함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독창적 개념의 도입을 강조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가 실시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유산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기관들 간의 서로 상충하는 견해와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가기란 매우 어렵지만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인류를 깨우치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이끌 것이다.

###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발표에 감사를 표한다. 커티스 부장의 발표를 통해 2003년 협약의 제정 및 이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협약 당사국이 취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호 조치와 등재유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커티스 부장의 발표에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다. 따라서 발표내용을 논의하는 대신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은 유산의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 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복, 도구, 주거와 같이 세시풍속 및 종교 등과 관련된 귀중한 민속문화유산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나아가 귀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후학을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전승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는 일년에 한 번 자신의 기·예능을 선보여야 한다.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은 유산의

원상태 유지, 정부 주도의 전승자 교육, 기·예능 공개의 의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고, 한국은 2005년 협약을 비준했다. 2006년 협약의 효력이 발휘되자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원상태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반면, 협약은 평가, 기록, 연구, 보존,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유산의 생명력 보장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협약 비준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상태 보존에 중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일한 방법과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협약 비준 후 무형유산은 더 이상 유형유산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제시된 무형유산의 원상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유산의 보호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학자는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형유산 보호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며, 이 법을 근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 아태무형유산 센터가 발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문화재 보호 예방책 마련, 민간 보호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어느 학자가 지적했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무형유산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유산의 지정과 등록, 변경 및 발굴 승인, 문화유산의 보존, 보조금 지원, 조선시대 왕궁, 왕릉 및 사적지 관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북한과의 교류, 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전문가 양성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역할 이외에 문화재청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첫째, 문화유산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문화유산정보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둘째, 교육용 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셋째,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법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형유산이 지적재산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인 원상태 유지와 무형유산에 부여되는 새로운 창

조성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법을 적용하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종교제례 및 종교제례악을 포함하여 14건의 등재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 목록 등재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개최된 무형유산 보호 세미나 및 회의 덕분에 무형유산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유토론

이근관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추가 토론 기회를 주었으나 시간 제약상 한 가지 질문이나 발언만을 허용했다. 이에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가 발언 기회를 잡았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는 두 발표자의 발표문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2003년 협약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한 가지 난점이 종교적 무형유산과 종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우리가 원주민의 영성 문제를 다루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등재된 유산종목들도 분명 이를 뒷받침하지만, 토속적이거나 영적 기반의 유산이 아닌 종교이념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다소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발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갈라 교수의 논평에 감사를 표한 뒤 종교적인 무형유산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로 크로아티아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 보고서를 보면 때로 지배 종교가 무형유산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블레이크 교수는 쉬쉬하기 마련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가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반갑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임에 분명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분명 이 문제가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이유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어 문제 또한 이렇듯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무형유산 문제는 언어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협약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언어

를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특정한 무형유산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점을 지적하는 방법을 들었다. 종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반대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세션 2. 무형유산의 가치 어디에 있는가?

좌장을 맡은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참석자들의 점심식사를 공동 후원해준 당진시 측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그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열린 오늘의 회의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 수년 간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개최한 일련의 회의 중 하나라는 점을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킹과 무형유산 보호 분야와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문제 등이 있었다.

박 본부장은, 무형유산 보호를 생각하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무형유산의 속성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창의성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심지어 인권과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는 2003년 협약의 힘이 컸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세션의 주제가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외의 저명한 발표자 세 명과 토론자 세 명이 자리했다고 소개한 후 시간상 발표자들에게는 20분씩, 토론자들에게는 10분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 피터 세이텔 스미스소니언연구소 수석 민속학자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피터 세이텔 박사는 발표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도구와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더 광범위한 비전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회제도'라는 개념 체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상품만이 아니라 문화적 생산과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사회제도라는 개념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끊임없이 사회·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이 체계는 또한 지역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사회제도-박물관과 비정부기구 같은 협력기관-와의 긍정적인 관계로도 이어진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제도를 활용하자는 이 글의 핵심 논지에 동의하는 바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본질주의적 해석은 문화의 속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그것이 재생산되었을 때는 원래의 모습과 같지 않다. 무형문화유산은 이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연관 지어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의 변화는 창의적인 문화교류 과정이자 문화적 접촉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를 원형이나 진정성,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용인할 수 있거나 용인할 수 없는 변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 역시 세이텔 박사가 제기하는 질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항상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진정성의 정의와 연관되므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산 종목들은 진정성과 문화적 전통을 기준으로 기록되고 체계화되며 평가된다. 때로는 정통적 전통이 규정되고 무형문화재가 등재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 관습이라는 사회제도가 약화된 사회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정부나 기타 사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등재된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는 소멸 직전의 무형유산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이텔 박사가 제기하는 질문,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허용 가능한 변화와 그렇지 않은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재생산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사회제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인정할 때 무형유산 보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찰해봐야 한다.

둘째로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이 새로운 관점이 문화다양성의 정신을 증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세이텔 박사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여러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일부 사회는 최근에 국제이주로 인해 유입된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들 사회는 이제껏 문화와 인종 면에서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국 국민의 관심을 없애려는 시도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은 또 어떤가? '주인' 사회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주인국가는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거나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신청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을까?

셋째, 세이텔 박사가 제안한 디지털 도구 싱크로텍스트(Synchrotext)는 보급, 연구,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기록·보관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여겨진다. 세이텔 박사가 언급했듯이 특히 동아시아 국가 언어를 포함해 더 다양한 언어로 언어 톨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연구뿐 아니라 전송을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는 포털사이트-누구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포털-를 구축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 피터 세이텔 수석연구원의 답변

시간상 피터 세이텔 박사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하느냐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세이텔 박사는 사회제도라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할 때 따르는 한 가지 결과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통 '보호'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무형문화유산이 하나의 사회제도로 재생산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보호를 위한 방법에는 그러한 보호의 한 양식으로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공식적인 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세이텔 박사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은 세상에서 그들의 윤리적 지식과 물질적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중요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네스코가 이주민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아디 메레 라투나부아부아 국립유산문화예술원 문화담당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채택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무형유산 보호 조치가 더 일찍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생존 및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자금의 상황에서 무형유산 보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국가목록 작성을 처음 촉구한 것은 2003년 협약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모델법과 문화 전승자, 정부 및 개발 파트너를 모두 아우르는 집단 소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태평양지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2002년 기본체계가 시행되면서 국가 목록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태평양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목록 작성을 '태평양지역 예술 및 문화 정부간 회의(이하 CPAC)'가 내세우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으며, 목록 작성을 촉구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태평양 각국과 CPAC를 연결하는 국가연락창구는 남태평양공동체사무국(이하 SPC)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창구들은 외교부, 문화부, 문화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연락창구는 수년 동안 목록 작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을 확대했으며, 모델법 시행에 따른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 소유자와 보호대상-를 파악하고, 마을 기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 지역 현장연구요원, 공동체를 아우르는 엄격한 전통규범을 준수하며 장기간의 시험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참고: 피지 모델은 2005~2012년 추적이 이루어진 14개 지역 중 8개 지역에 적용되었고, 그 중 파푸아 뉴기니 모델은 피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외부인들이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사전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유영역(public domain)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지 않고, 교육 목적을 위한 전승과 보호라는 이분법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2개 태평양 회원국과 협력하는 SPC는 2011년 태평양 각국 유산 센터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무형유산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무형유산 및 유적지를 찾아내는 방법, 무형유산의 이주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공동체

의 자문 및 구전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무형유산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 짓는 방법을 알려준다. 회원국들은 각국의 문화부를 통해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실용적인 안내책자는 모델로서 제작된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정부구조, 자원 및 정책 활용 가능성 (여전히 개발되고 있음), 시스템 참여 역량 등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안내책자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불과한 도구이며, SPC 웹사이트(www.spc.int)에 게시되어 있다.

피지는 정책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자는 무형유산협약 비준 과정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유네스코사모아사무소는 공식적인 협약 비준 과정에서 느낀 생각이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태평양지역의 도시 거주자들은 어업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섬 마을을 떠나 일자리를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현행 유럽식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여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프로그램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유네스코가 실시한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계획에 참여하였고,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역 기반 콘텐츠에 대해 ESD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기초적 수준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재해와 같은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전통 선박 제작법, 항해술 등을 가르치거나 공동체의 참여가 강화된 예술 교육에 은퇴교사가 조력자로 나서고 있는 등 현재 진행 중인 ESD 프로그램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은 최근 유네스코 호주신탁기금의 지원을 받아 '태평양유산허브' 설립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유네스코 호주신탁기금은 태평양 국가들과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킹 및 역량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태평양지역은 세계유산협약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와 국가법을 통한 유산 보호와 개입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를 보호하고, 무형유산 및 세계유산 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추구한다. 전통 항해술 및 마우리, 쿡아일랜드, 타히티, 뉴질랜드, 라파누이 유적지와 같은 태평양지역 전통 항해 유적지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전통 항해로와의 연결, 문화 교류, 바카 모아나(Vaka Moana)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관계를 강화하

는 데 사용되었던 구상제도(barter system) 등 구전 역사 복원에 힘쓰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 수가 최근 급감한 것은 과거와 달리 전통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때문에 작물 재배 패턴이 바뀌게 되었고, 전통 관습을 이어가던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 왔다. 일례로 벼농사나 목축업으로 인해 전통 초가 지붕의 원료가 되었던 작물 재배가 급감하고, 초가지붕 제작 기술과 노하우도 사라지게 되었다.

농업 및 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관습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도시의 빠른 생활 속도와 변화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 통조림이나 캔으로 만든 가공제품 구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 고유의 어종이나 식물종에 대한 명칭과 전통적인 달력 주기도 더 이상 후대에 전승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과 관습은 그 명맥이 다하고, 전통지식의 전승을 중시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으로 관련 지식도 사라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명칭과 관습을 알고 있는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무형유산 목록작성은 국가정체성 강화 일환으로, 모든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따른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정부가 조상들이 사용했던 생존 방식과 노하우를 이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목록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평양지역은 홍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절망의 시기에는 지역의 무형유산, 지식 및 자원 기반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의 자원이 현재 속도로 계속 고갈되고 전통지식에 기반한 지역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면, 누가 관련 전통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 유산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피지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지역 전체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태평양은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각국은 CPAC를 통해 태평양지역 문화환경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과거와 같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발 도서국가를 위해 문화다양성 및 문화 산업을 촉진하고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필수 요소로 무형유산을 포함한 두 건의 최근 문서가 있는데, 바로 '2010-2020 태평양지역 문화 전략' 및 '2009-2015 태평양지역 문화 및 교육 전략'이 그

것이다. 이 문서들은 올해 7월 솔로몬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예술축제에 참가한 문화부장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태평양예술축제는 4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태평양지역의 리더들은 각국의 문화환경부가 실행에 옮겨야 할 무형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정책 및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삶과 관련하여 무형유산 협약 및 그 이행의 효과를 측정할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정책과 활동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앞으로 정책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각국이 어느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는지 공동체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안토니오 아란테 브라질 캄파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박환영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교수

안토니오 아란테 교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인류학적인 경험과 이론을 토대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절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논의하고 있다. 토론자로서 아란테 교수의 입장과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발표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과 앞으로 좀 더 부연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문제를 개발도상국으로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native 인디언들의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일본 아이누족(Ainu)의 무형문화유산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방안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면 개발도상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무형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도전과 전망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에 못지않게 개별적인 국가나 문화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한 독립적이고도 변별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2.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2003년 채택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좀 더 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전에 진행되었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노력과 경험 중에는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대한 권고안'과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언 프로그램'등이 있다. 이러한 권고안과 걸작 선언 프로그램이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비교해서 절멸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또한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 재료, 개량 외에도 창작, 원작자 등의 요소도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동안 전승되어 오는 전통성이 강조되면서도 때로는 개량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창작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그리고 주어진 사회분위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에 치우쳐 인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아란테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어떠한 사회에 속하고 어떠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완고성 그리고 성과 연령에 기반을 둔 권력관계나 계급관계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역할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5.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 작업과 관련하여 브라질과 남미에서 진행중인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작업의 사례가 궁금하다. 또한 브라질과 남미의 사례가 다른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브라질과 남미의 사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란테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6.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주의와 도시화라는 오늘날 지구촌의 최근 여건을 고려한 미래의 대안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

7.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호라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란테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8.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류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작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인류학자로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선정하고 그리고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보호라는 일련의 정책과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류학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윤리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 안토니오 아란테 교수의 답변

아란테 교수는 민족지학적 자료의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민족지학적 자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활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를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연구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민족지학적 자료가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와 관련하여 아란테 교수는 그러한 격차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각 국가별로 또는 각 국가 내 지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나 많은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들의 개발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내부 상황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아란테 교수는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 야기한 결과 또는 결론을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의 정치와 관련하여 아란테 교수는 인류학자, 비정부기구 및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처한 윤리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 단체가 스스로에게 공동체의 공식적인 해석자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치에 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하

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마치며 아란테 교수는 2003년 협약과 관련된 이슈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공동체의 해석자라는 임무를 부여하여 공동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가들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션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진흥 방안

좌장을 맡은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은 제3세션 좌장을 맡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발표자들을 소개했다.

####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이상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본 발표문에서 임돈희 교수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던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의 특징, 특히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제도의 운영에 도움 혹은 참고할 수 있는 한국무형유산 제도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 운영의 특징, 예를 들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발표자는 이 분야에 전문가답게 단순히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을 기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재 한국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 인위적 보존의 문제, 무형유산의 박제화 문제 그리고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이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언급하고 미래의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의 방향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일부 하였지만 직접 정책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이나 문제 제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본 학술대회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학술대회이며 이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 본 발표의 가장 큰 목적인데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평자는 발표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은 무형유산 정책은 다른 국가보다 일찍이 실행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및 활용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실제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그리고 인간문화재의 지정 등은 다른 국가의 무형유산 정책 그리고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용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거나 최근 논의 사항만을 간략하게 언급해서는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 참조하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 도리어 한국 무형유산 정책의 등장 배경과 운영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발표문에서 언급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쟁점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다양한 보호 대책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은 발표자가 강조한 것처럼 다른 국가보다 일찍이 시작하였다. 다만 본 논평자는 무형유산 정책이 시행된 동기는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보호라는 문화정책에 측면보다는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당시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보호 및 활용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당시 정권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민속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무형유산 지정에 있어 특정 학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정 민속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이를 승인하는 모든 과정에 민속학자 혹은 관련 학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속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인위적 보존, 박제화 등 발표자가 최근 한국의 무형유산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한 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는 최근의 여러 지역 사례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비단 무형유산 정책은 국내 문화계에 논의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나라와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특정 국가 간에 문화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고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 항의하였고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이전부터 각 국가에서 무형유산 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었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도 연장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특정 무형유산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특정 영토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대립으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2003년 협약이 공포되고 2년 후인 2005년 11월 16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유명한 인류학자 끌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마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 기구인 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도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세계 평화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과 관련된 일련의 잡음도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유네스코의 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일부 무형유산 담당자 혹은 연구자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와 같이 유네스코 정책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의 무형유산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 교수의 발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 학술대회에 주관 부서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술대회 혹은 연구 사업은 주로 국제적 협력 혹은 보호 정책과 가치의 극대화 등 정책 수행 방법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 혹은 많은 한국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 민속이 국가 혹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 관계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일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된 이후에 변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발표문에서 판소리 지정과 영향 관계를 언급했듯이 특정 한국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 이후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특히 유네스코 무형유산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정 이후의 변화관계에 대한 연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임돈희 교수의 답변

임돈희 교수는 이상현 교수의 발표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운을 뗐다. 임 교수는 민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옛 것'이라는 측면, 다른 하나는 '우리의 것'이라는 측면이다. 국가가 민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보통은 한 가지 측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외세의 박해를 받은 국가의 경우 문화를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 교수는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협약의 등재 메커니즘이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 임 교수는 유럽 소재 유적이 80% 이상 등재된 1972년 세계유산협약 등재목록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도와는 다르게 유산을 많이 등재한 국가일수록 문화적으로 발전했거나 선진국이라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임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에도 전파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등재 유산이 등재 유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하루 속히 없애야 한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무형문화유산을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레티민 리 베트남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무형문화유산은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한 주요 잠재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 새로운 난제가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갈라 관장이 언급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수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특히 무형유산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각 지방정부들이 유적지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광이 매우 높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고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위험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하며, 이러한 유산은 활용하면 할수록 변질 및 손실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요구와 압력을 견디어 내질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과 무형문화유산, 양자를 모두 유지하기는 지극히 힘들다. 관광 그 자체가 무형문화유산과 그 표현물의 근본적인 양식과 형태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아름다운 풍경에 비유한다면 관광은 이 풍경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 관광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길은 보다 넓어지고, 그 결과 풍경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한다.

베트남 이곳 저곳과 여타의 방문지에서 본인이 목도한 바는 관광 개발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 지앙(Ha Giang) 지방에서는 다오(Dao)족의 성인식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날마다 거행된다. 사파(Sapa)와 라오 카이(Lao Cai)에서는 (오늘날 소수 민족에 속한 연인들의 의례화된 구애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장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선다. 이러한 전통 생활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인 의식은 오늘날 전문 예술가들이 각본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관호(Quan ho)라는 전통 가요(현재 베트남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공식 등재됨)를 남녀가 짝을 이루어 공연하는 대신에,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합창단을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버금가는 문제점에는 저품질의 전통 공예품과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거나 문화유산 전수자들이 장사꾼, 전문 판매인, 행상인으로 변질되는 양상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만들며, 소중히 보존해야 할 공동체와 무형문화유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오로지 관광 개발의 용도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갈라 관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이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와 관광 프로그램 기획자, 공동체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해 공동체는 관광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종목과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을 공유하게 되는 방식에 대한 결정은 공동체 주민들이 내려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박물관을 통해 공동체는 자신들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표현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할 때에는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 공동체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관광 상품의 진정성과 관광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것이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관광 관련 활동에 협력하고 조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활동 영역은 때로는 서로 교차하지 않고 평행을 이루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광 프로그램 기획자와 관광객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에 필요한 기억과 연관된 자연 공간과 장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때 문화유산 보호 쟁점을 우선 시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유산 연구 활동을 담당할 전문 직원과 문화와 관광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관계자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전문적 실행에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규율, 기준, 목표, 필수 요건에 관한 지식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갈라 관장의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관광의 초점을 단순히 유네스코가 이미 인정한 유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의 성공 여부가 바로 이러한 기회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을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기경영 방식을 지지해야 하며, 이는 문화관광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해당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관광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구상되는 즉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해당 유산이 보존되

어 있는 지역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 보유자가 문화자원을 오늘날의 시장 경제에 적합하게 활용할 때 문화유산은 잠재력인 동시에 추진력으로서의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운영진과 연구자들은 공동체가 증진시킬 만한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문화자원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아마레스와르 갈라 관장의 답변

갈라 관장은 레티민 리 소장의 논평에 감사함을 전하고 한 마디 덧붙이고자 했다. 갈라 관장은 우리가 기준 규범의 설정 수단을 논의할 때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성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의 문화현장은 세계관광기구 헌장 및 ICOMOS 헌장과 같이 연성법을 수단으로 하며 다양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헌장이 있다. 이 헌장의 상당수가 무형문화유산을 사실상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협약의 이행을 사실상 지원하는 일종의 연성법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토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 문화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처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적 명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는 규범이 내면화되고 강화되지 않는다면 문화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이들이 맺는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통구조를 활용하는 국가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 다양성은 개인부터 전 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공동의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제사회는 문화 다양성이 없다면 인류의 생명력과 삶의 가치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문화 다양성의 이론적 토론을 넘어 우리는 실제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회

의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모든 인간의 지적, 정서적, 영적 표현방식일 뿐 아니라 표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화는 유무형 문화유산의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문화를 논하는 것은 사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도 모두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고유문화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발전 목표를 세울 동기로 삼기도 한다. 모든 문화는 보호하고 향유할 가치가 있으며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특히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쉽게 훼손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발표한 공식, 비공식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를 놓고 토론하도록 하겠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발표문에서 인도네시아 어린 세대가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경험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원이 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방식에는 정규, 비정규, 비형식, 3가지 방식이 있다. 정규 교육에는 학교에서의 체계화, 조직화된 활동이 있고, 비형식 교육은 삶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태도,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에 걸친 과정, 비정규 교육은 워크숍 등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해당된다.

이 세가지 교육방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세대간 전승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교육이 정규, 비정규, 비형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가지 교육 방식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생태학적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특정 교실과 분야에서뿐 아니라 모든 분야와 장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향유하게 될 것이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세가지 방식을 활용한다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바틱박물관 관리자와 페칼롱안 시장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바틱 문화유산과 와양인형극 보호 실행계획이 매우 꼼꼼하게 소개되었다.

기본적으로 2003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체계에 관한 법 제20호에 따르면, 직접 교육의 다각화는 현지의 잠재적 다양화와 일치하며, 국내 교과과정에 지역 컨

텐츠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콘텐츠에는 현지 언어, 미술, 문화, 무형문화유산의 유형이 포함되며 문화 다양성의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점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는 속도이다. 2006년 페칼롱안 시에서 바틱 문화유산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학교는 한곳이었지만 2009년경에는 페칼롱안 시의 230개교 모두가 바틱 문화유산을 지역 콘텐츠로 포함시켰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바틱을 배웠던 학생들은 다른 영역, 즉 집중력, 인내, 자신과, 협동 정신 등에서도 발전을 보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바틱 스타일을 고안하며, 프로그램이 주변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무제한이란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중하고 훌륭한 사례를 소개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례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발표문에 따르면 2003년 협약 제21조는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을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활동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ODA의 지원이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가? 인도네시아의 문화관광부와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국가적 문화를 개발할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알고 싶다.

셋째, 사만 춤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춤의 기원인 지역 이외의 곳에서도 행해지는가? 사만 춤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다른 국가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일년에 몇 번 정도인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전 세계 시민들도 이 무형문화유산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사만 춤은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춤을 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과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란다.

넷째, 바틱 박물관에서 바틱 문화를 훈련 받은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006년~2008년도에는 감소했으며(4815명 → 12905명 → 5749명) 교사의 수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1053명 → 1798명 → 925명).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소규모 도시라는 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보인다. 이 방식을 다른 국가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나 협력기관이 있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주신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공헌한 점에 대해 바틱 박물관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답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시간을 들여 발표문을 검토해준 정정숙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인도네시아가 ODA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도네시아는 2005~2007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통인형극 와양에 대해 원조를 받았다고 답하며, 해외 원조는 신청과 집행에 있어 때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역자금이나 자기조달 자금이 보다 덜 복잡하므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보호활동 대부분이 정부를 통한 지역 차원의 자금 지원이나 비정부기관과 공동체 직원들에 의한 자기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만 춤이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되는지 여부에 대해,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그러하다고 대답했다. 사만 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해 말 사만 춤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상세히 언급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페칼롱안은 일부 학생들이 졸업해 나가고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매해 일정 수준의 학생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수 부족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학생들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기회가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종합토론〉

###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 가능 발전: 효율적 연계방안과 과제

이삼열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2003년 협약이 채택된 이래 이룩한 빠른 진전과 관련해 펼쳤던 주장을 요약 정리했다. 또한 다른 발표문에서 다룬 주요 관련 쟁점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평화를 향한 다양한 근본적 가치(종교적 심리적 가치)에 대한 피터 세이털 박사의 언급을 인용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 및 협약상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를 다룬 발표문에서 웨리프 카즈나다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예로 든 바틱 문화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이것이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델이 되거나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논평과 요약을 위해 카즈나다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 웨리프 카즈나다 세계문화의 집 대표

카즈나다 대표는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아기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면서, 아기를 사랑할 때에는 언제 닳칠지 모를 위험들을 인식하고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의 통신수단과 증거들을 통해 협약에 해를 끼칠만한 위험요인들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은 앞으로 성장해야 할 어린 아기와 다름없으므로 현재는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 중 하나는 협약의 초기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카즈나다 대표는 협약이 작성된 당시에는 이 협약이 1972년 협약과 확연히 다르고,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이나 뛰어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청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우리는 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들은 목록에 등재된 유산만 지원하고 보호하며, 다른 유산들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약 정신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보호해야 한다. 등재되었다고 해당 유산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등재에 불과할 뿐이다.

카즈나다 대표가 지적하는,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은 등재된 유산들은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란 점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의 경우 등재유산은 등

재되는 순간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화석화된다. 그러나 이는 협약 정신과 정반대이다. 이 유산은 살아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협약이라는 아기를 돌봐야 하며 이를 탄생시킨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즈나다 대표는 토론을 끝맺었다.

#### 이삼열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카즈나다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무형문화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삶에 귀중한 유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러한 유산이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올라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세를 위해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넷 블레이크 이란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

블레이크 교수는 우리가 고려하고 연구해야 할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수많은 논평이 이루어졌지만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바로 무형문화유산협약은 국가 주도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 주권은 신중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협약은 다수의 여러 가지 협약과 조약에 비해 특정 틀 내에서 보다 신중한 보호를 받는다. 블레이크 교수는 총회가 정부 간 정책결정기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위원회는 정부 간 기관보다는 보다 전문가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레이크 교수는 또한 많은 국가들이 협약이라는 틀 내에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그 진행 방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두 사례는 그 특수성이 협약의 당초 개념에서 훨씬 멀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모범사례는 공유해야 하는 우수 사례이므로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팀 커티스 문화부장의 생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가들이 유산의 등재를 너무 중시하는 문제와 간과되는 양상에 대해 블레이크 교수는 문화유산을 목록에서 제거하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만약 목록에서 뺄 수 있다면 유산이 화석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블레이크 교수는 공동체가 유산을 계속 행하고 시연하며 유지하고 전승할 의지나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사라지는 유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쳤

다. 이는 인권, 특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협약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확인된 전승에 대한 위협요소는 권리 보장의 위협 요인들이다. 인권의 보장과 무형문화유산의 연속성 간의 관련성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공동체가 보호 받는다면 이는 많은 유산들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 이삼열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블레이크 교수에게 사회 발전, 민주주의, 평등, 자유 등의 쟁점과 충돌을 일으키는 전통문화를 보호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 자넷 블레이크 교수

블레이크 교수는 이 문제는 보다 폭넓은 토론에 해당된다고 대답했다. 이란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시행 중인 이슬람법과 관련해 보편적 권리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블레이크 교수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지만 여러 교훈들을 얻었으며, 이 교훈은 무형문화유산 등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인권 쟁점과 관련해 이 쟁점들은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각 사회가 이 쟁점들을 다루는 고유한 방식을 찾고 나름의 특정 실행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국가에 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시간을 연장해 토론을 계속하고 싶지만 당초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토론을 마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